



제 42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사기범죄인 명단 공개〉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49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5. 3. 20.

다.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방지·처벌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기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정비업체·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브로커 등과 공모한 병원 과잉·허위 진료 적발 사례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하여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에 따라 유죄의 확정을 받은 자가 ① 그 보험사기이득액의 1억원 이상이거나, ② 「형법」에 따른 범단체 등의 조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성명·나이·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1조의2(명단공개) ① 금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보험사기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형법」 제114조에 대하여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공개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보험사기범죄에 관한 사항(위반행위 및 죄명, 판결선고일 및 선고형량, 보험사기이득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행위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공개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보험사기범죄의 동기, 내용 및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보험사기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u>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u> ⑥ <u>금융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u> 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명단공개(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훼손을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¹⁾함.

○ 명단공개는 그 자체로서는 법적 효과가 있지 않은 ‘사실행위’이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행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명단공개 대상으로는 이 법의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 ① 그 보험사기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② 「형법」 제114조에 대하여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

1)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전면개정판, 417쪽

기방지범”이라 함) 제8조²⁾는 ① 보험사기행위³⁾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② 제5조의2⁴⁾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 제9조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사기이득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아울러, 이러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고,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음⁵⁾.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한편, 「형법」 제114조⁶⁾는 범죄⁷⁾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경우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집단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이 보험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 ① 보험사기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② 범죄단체·집단을 조직한 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해서는 공개심의 위원회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험사기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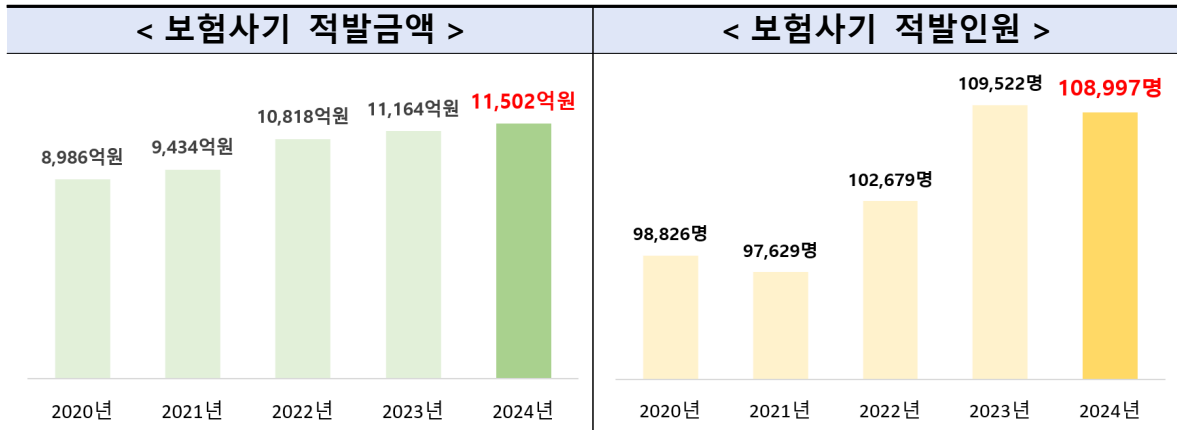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8,986억원에서 2024년 1조 1,502억원으로, 적발인원은 2020년 9만 8,826명에서 2024년 10만 8,997명으로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6)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정

8) 범죄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집단의 구성요건에 더하여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표 1]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거 유사 범안의 논의 경과, 개정안의 보완사항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도입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과거 유사범안의 논의경과를 보면, 지난 제21대국회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보험사기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⁹⁾(이하 “정무위원회 의결안”이라 함)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명단공표 내용이 삭제된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¹⁰⁾.

9) 의안번호 212639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자: 2024. 1. 24.

10) 정무위원회에서 2023. 11. 30. 의결되었으나, 2024. 1. 2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4. 1. 25.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4. 2. 13. 공포되었음.

- 제21대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안에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개정안과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제21대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안과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제21대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안	개정안
공개대상	· 보험사기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 보험사기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서 ① 보험사기이득액이 1억원 이상 또는 ② 범죄단체·집단조직죄 해당하는 자
공개범위	· 명단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보험사기죄에 관한 사항
공개심의위 고려사항	· 미규정	· 보험사기범죄의 동기, 내용 및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

* ① 보험회사 임직원, ②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법인인 경우 임직원),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④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⑤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종사원

- 다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명단공개 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한 대안이 의결되었음.

-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명단공개가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이나, 정무위원회 의결안에서는 명단공개 요건 및 절차 등 대부분의 사항

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관계기관인 법원행정처도 명단공개 규정을 두지 않은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음.

□ 다만,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명단공개 요건과 절차를 제21대국회의 정무위원회 의결안에 비해 비교적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명단공개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범죄단체·조직을 조직·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도 성명·나이·주소 및 보험사기범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명단공개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개정안은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보험사기범죄의 동기, 내용 및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공적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형법」 상 사기죄 처벌
이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
조·변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¹¹⁾할 수 있음.

○ 또한, 이와 같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
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됨.

-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
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형법」 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¹²⁾임.

11)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
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고
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사기·의료법위반)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는 「형법」 상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으로, 위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민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지급받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적 보험과 동일하게 명단 공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 과거 유사 법안의 논의 경과 및 개정안에서 보완한 사항, 공적 보험과 관련한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사기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악성 보험사기범죄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도 점차 고도화되는 보험사기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아울러,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보험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 보험사기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범죄단체·조직을 구성·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해 명단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보험사기죄 처벌 및 명단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른 법률 위반행위 또는 사기죄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¹³⁾될 수 있음.

- 참고로, 제21대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안에서는 명단공개 대상을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¹⁴⁾으로 한정하였음.

○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른 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13)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에도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명단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14) ① 보험회사 임직원, ②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법인인 경우 임직원),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법인인 경우 임직원), ④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⑤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종사원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함.

- 개정안에 따른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명단 공개 여부에 지속력을 미치지 않는으나¹⁵⁾, 명단 공개를 위해서는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제 조항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의2¹⁶⁾¹⁷⁾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15)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6)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7)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106
